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의도적 쟁점 축소와 자료 배척, 뒤바뀐 증거 평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전문가 좌담회

| **일시** : 2026. 11. 5. (목)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 **참석**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
박주민 국회의원, 이주하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엘피),
한상진 기자(뉴스타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전문가 좌담회(안)>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 의도적 쟁점 축소와 자료 배척, 뒤바뀐 증거 평가 -

❒ 개요

❍ 취지 :

- 오세훈 사건 1심 재판부는 총 10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5건의 혐의를 따로 가려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명한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함
- 이에 당 법률위원회는 오랫동안 이 사건을 추적해 온 법률가와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항소심의 판단 근거와 법리 해석, 쟁점의 사실관계와 증거능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함

❍ **일시 : 2026년 11월 5일(목) 오전 10:00~11: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 주요 참석자 :

- 좌장 : **양부남** (국회의원 / 당 법률위원장)
- 발제 : **문건일**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
- 토론 : **박주민** (국회의원 / 당 오세훈한강버스비리은폐 진상조사단장)
 이주하 (법무법인 제이엘피 변호사)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등
- 사회 : **조기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 세부일정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Opening	10:00~10:10 (10)	- 참석자 소개 및 인사 등	사회
발제 및 토론	10:10~11:05 (55)	- 진행 : 05분 - 발제 : 20분 (1인) - 토론 : 30분 (3인×10분)	좌장
Closing	11:05~11:30 (25)	- 종합 토론 및 마무리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판결의 증거평가와 무죄 판단의 문제점

2026. 11. 5.

발제자 문건일(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

Ⅰ. 문제의 제기

1. 사건의 개요

특검은 오세훈 시장, 강철원 전 캠프 비서실장, 후원자 김한정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오세훈이 2021. 1. 22.경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한정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하여, 김한정이 2021. 2. 1.부터 3. 26.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명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여론조사 10건의 비용을 대납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자 강혜경씨의 대리인으로 중앙지방법원과 특검의 참고인조사 및 증거제출 등에 관여하였습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원은 올해 7. 22. 공소사실 중 연번 1~4, 6번의 여론조사 5건과 2100만 원의 대납을 인정하여 오세훈에게 벌금 1천만원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10. 23.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결정을 뒤집고 오세훈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판결의 차이는 법리가 아니라 증거평가에서 나왔습니다.

구분	26. 7. 22.자 1심 서울중앙 2025고합1620	26. 10. 23.자 항소심 서울고법 2026노1914
오세훈	벌금 1,000만 원, 추징 2,100만 원	무죄
강철원 / 김한정	벌금 300만 원 / 벌금 500만 원	무죄 / 무죄
인정 범위	여론조사 5건(연번 1~4, 6), 2,100만 원	전부 불인정
강혜경 휴대전화 녹음	증거로 사용	증거배제결정

2. 문제의식

명태균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점은 1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태균 진술 가운데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가려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명태균을 탄핵하는 데 판단의 대부분을 쓰고, 명태균 진술을 제외하고도 남는 객관적 자료는 하나씩 떼어내어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본 발제는 ① 항소심이 쟁점을 어떻게 왜곡하였는지, ② 캠프 관계자 카카오톡, 김한정-강혜경 통화녹음, 김한정 면담 메모를 어떻게 잘못 평가하였는지, 그리고 판결문 자체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 ③ 그 결과 정치자금법의 규율에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 ④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Ⅱ. 항소심 판결의 논증 구조

비판에 앞서, 항소심이 어떤 순서로 무죄에 이르렀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명태균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 하나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닙니다. 판결은 크게 네 단계로 짜여 있습니다.

1. 증거의 범위를 제한(증거능력)

항소심은 먼저 강혜경 휴대전화에서 나온 통화녹음을 증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휴대전화는 김영선 공천 관련 사건의 영장으로 압수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그 녹음에서 파생된 관련자 진술과 후속 압수물은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며 증거로 인정하였습니다. 1심이 사용한 김한정-강혜경 통화는 이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2. 쟁점을 두 가지로 설정

항소심은 정치자금 기부가 성립하려면 ① 오세훈이 2021. 1. 22.경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비용 지급 의무가 생겼고, ② 김한정이 오세훈의 요청으로 그 비용을 대신 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세훈의 의뢰 없이 제공된 여론조사의 비용을 김한정이 낸 경우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다며 판단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두 쟁점의 직접증거는 명태균 진술뿐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3. 명태균 진술 전체를 탄핵

항소심은 명태균 진술이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과장과 추측이 섞여 있고, 불리한 질문은 회피하였다.

○ 자기 사건에서 유불리를 고려할 유인이 있었고, 오세훈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다.

○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구체화되거나 번복되었다.

그 결과 명태균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라도, 이를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4. 보강 자료를 쟁점별로 배척

이 기준 아래에서 항소심은 쟁점별로 나머지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①(의뢰 여부)에 대해서는, 오세훈과 명태균이 만나고 강철원이 명태균과 협력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협력 관계 이상의 의뢰'라는 증명은 없다며 다섯 갈래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 명태균의 ‘1. 22. 장복터널 통화'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14:20 설문지 전송이 앞섬, 김태열은 통화를 듣지 못함).

○ 오세훈에게 의뢰할 동기가 없었다(캠프 자체 조사, 명태균 조사는 쓸 가치 없다는 검증 결과).

○ 의뢰의 범위와 시기에 관한 협의가 확인되지 않는다.

○ 명태균이 김종인에게 역량을 과시하려고 스스로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 김균태 카톡은 1. 22. 의뢰를 단정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쟁점 ②(대납 요청)에 대해서는, 김한정이 만난 적 없는 명태균 측에 1,000만 원을 보낸 것이 의심스럽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정으로 오세훈의 요청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김한정은 오세훈이 아닌 강철원을 통해 명태균을 알게 되었다.

○ 오세훈과 김한정은 불법 대납을 부탁할 만큼 가깝지 않았다.

○ 본인 명의 계좌로 부가세까지 넣어 송금한 것은 은밀한 대납답지 않다.

○ 그 돈은 명태균의 경비를 보전해 준 것일 수 있다.

5. 정리

결국 항소심의 논증은 '녹음 배제 → 쟁점 축소 → 명태균 탄핵 → 나머지 자료의 개별 배척'이라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앞 단계가 뒷 단계의 기준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이하에서는 이 각 단계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Ⅲ. 쟁점 설정과 명태균 진술 취급의 문제

1. 쟁점의 축소

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심은 쟁점을 '1. 22. 의뢰'와 '대납 요청' 두 가지로 좁히고, 그 직접증거는 명태균 진술이 유일하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이 설정 아래에서는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곧 사건의 결론이 됩니다. 나머지 자료는 "그것만으로는 2021. 1. 22. 의뢰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씩 배척되었습니다.

반면 1심은 명태균 진술을 여러 간접사실 가운데 하나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통화·메시지·입금·결과 전송의 시간적 선후를 맞춰 가며 연번별로 인정 여부를 따졌습니다. 그 결과 10건 중 5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배척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쟁점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간접증거는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종합적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1]. 항소심이 "직접증거는 명태균 진술이 유일하다"고 전제한 순간, 나머지 간접증거들은 각각 단독으로 공소사실 전부를 증명해야 하는 불가능한 과제를 떠안게 됩니다.

[1]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2. 명태균 진술의 취급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2],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3].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중 주요 부분을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밝혀지면, 나머지 부분을 믿기 위해서는 그 부분만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

항소심은 명태균 진술의 과장('오세훈이 울며 전화했다',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 번복(연번 1 조사는 김종인을 위해 스스로 한 것이라는 진술), 수사 중 유불리를 고려한 진술 유인, 오세훈에 대한 적대감을 이유로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다고 보고, 위 2016도2889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정들은 1심도 이미 인정하여 명태균 진술의 상당 부분을 배척했습니다. 명태균의 진술이 과장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3]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을에게서 3차례에 걸쳐 약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을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는 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자금 조성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고 자금의 사용처를 달리 진술한 사안에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검찰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을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을이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성 자금을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공여하였다는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두루 살펴 판단할 때 자금 사용처에 관한 을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을의 검찰진술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위 법리는 나머지 진술을 믿으려면 '보강하는 다른 증거'를 찾아 대조하라는 것이지, 진술자를 탄핵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 항소심이 보강증거의 후보가 되는 자료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Ⅳ. 핵심 자료에 대한 항소심 평가의 문제

아래 세 자료는 비판의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카카오톡은 증명력의 축소, 통화녹음은 증거능력의 배제, 면담 메모는 같은 기재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문제됩니다.

1. 캠프 일정기획팀장의 카카오톡: 증명력의 축소

오세훈 캠프 일정기획팀장 김균태는 2021. 2. 22.경 지인에게 다음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증거순번 187). 연번 6 공표용 여론조사에서 나경원이 오세훈을 앞선 결과가 공표된 직후입니다.

[증거순번 187, 7826쪽].[4]

발신자	내용
김균태	머니투데이는 사실 우리가 의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여론조사 업체가 병신임 =- = 강철원 실장님 열받아서 난리난리. 그런데 그 소개해 준 사람이 김종인이라 ㅋㅋㅋ
	비밀임돠 ㅋㅋㅋ

[4] 1심은 "김균태와 정태준 모두 '카카오톡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021. 2.말 내지 3.초경 대화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증거순번 249, 10347쪽, 증거순번 255, 10453쪽), 위 대화는 2021. 2.말 내지 2021. 3.초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태준	ㅋㅋㅋ
김균태	우리 돈 써서 남 좋은 일 시킨...샘플이랑 뭐 이런 거 병신같이 했어요 ㅋ

항소심은 캠프 내에서 '캠프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우리 돈 써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① 이것만으로는 오세훈이 2021. 1. 22. 의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김한정이 오세훈의 의뢰와 무관하게 명태균의 비용을 보전해 준 것이라도 메시지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 메시지는 1. 22.자 통화를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라, 여론조사가 캠프의 의뢰와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는 명태균 진술의 핵심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는 것입니다. 항소심이 스스로 요구한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간접증거에 공소사실의 일시까지 단독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보강증거의 역할을 오해한 것입니다.

둘째, '김한정의 자발적 보전과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문언에 맞지 않습니다. 항소심 스스로 김한정은 캠프에서 보직이 없었고 비서실장과 사이가 나빴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런 김한정이 독자적으로 낸 돈을 캠프 내부자가 '우리 돈'이라고 부르고, 캠프가 '의뢰해서 만들어 놓은' 조사라고 하며, 비서실장이 그 결과에 격분한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메시지는 항소심의 대안 가설과 오히려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물론 이 메시지만으로 '캠프의 의뢰'에서 '오세훈 개인의 의뢰·인식'으로 넘어가지는 못하나, 그 연결고리는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할 문제이지, 이 자료의 증명력을 낮추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2. 김한정–강혜경 통화녹음: 증거능력의 배제와 그 이후

김한정은 2024. 9. 10. 강혜경과 통화하며 명태균을 만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증거순번 135)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놈이 없었거든. 어, 그러니까 "만나보시죠." 이렇게 된 거야. … 그러니 오세훈이 벌써 모 딱 더 사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난 거야.

항소심은 이 녹음을 증거능력 문제로 제외하였습니다. 강혜경의 휴대전화는 창원지법 2024-11376 영장(김영선의 공천 관련 정치자금, 2022~2023년)으로 압수된 것인데, ①행위 시기·대상 선거·관여자가 다르고, ②'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공통된다는 것만으로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③별도 영장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녹음파일과 이를 정리한 수사보고·녹취록(증거순번 20~23-1, 134, 135)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은 혐의사실 자체뿐 아니라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을 증명하는 간접증거·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5]. 항소심도 이 기준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창원 영장의 혐의사실은 명태균이 공천 등 선거 관련 조력의 대가로 강혜경을 통해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강혜경 명의 계좌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혐의는 단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공통된 것이 아니라, ①미래한국연구소라는 같은 조직, ②강혜경이라는 같은 수령 경로, ③선거 조력의 대가를 제3자 또는 정치인으로부터 받는 구조를 공유합니다. 이는 범행 수단과 방법을 증명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정인데도, 항소심은 '인물 공통'에만 답하고 '수법 공통'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관련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법리오해입니다.

더 문제되는 것은 배제 이후의 처리입니다.

첫째, 항소심은 같은 전자정보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 즉 관련자 진술과 후속 영장으로 얻은 증거는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녹음의 핵심 내용은 2024. 11. 28.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렇다면 녹음에 담긴 사실관계는 다른 경로의 증거로 다시 검토되었어야 하는데, 항소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증거 취급의 불균형입니다. 항소심은 2차적 증거에 대해 ① 수사 개시의 독립성, ② 언론 공개, ③ 영장주의 회피 의도의 부존재를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원

[5]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본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정이 그대로 존재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3. 김한정의 변호사 면담 메모: 같은 기재, 상반된 해석

사건 보도 직후 김한정이 변호사와 면담한 내용을 정리한 메모에는 명태균을 만나게 된 경위가 "강특보(?)가 연락하여 '만나봐라, 참신한 아이디어 가진듯하니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증거순번 220).

1심은 이 메모를 '김한정이 스스로 명태균을 만난 것이 아니라 캠프 측 요청으로 만났다'는 근거로 삼았으나, 항소심은 같은 메모를 '오세훈이 아닌 강철원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근거로 삼아 오세훈의 관여를 부정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메모의 핵심은 연락한 사람이 누구냐보다 김한정의 접촉이 캠프의 권유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강철원은 오세훈의 지시로 명태균을 검증하던 비서실장이고 공소사실상 공모자입니다. 비서실장이 보직도 없고 사이도 나빴던 후원자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명태균을 만나보라고 권한 사실은, 김한정의 금전 지급이 순전히 개인적 동기에서 나왔다는 항소심의 대안 가설과 맞지 않습니다.

앞서 본 녹음의 '만나보시죠', '오세훈이 몸을 사리는 거지'와 나란히 놓으면, 오세훈이 직접 나서지 않고 비서실장을 통해 후원자를 명태균과 연결하였다는 하나의 구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녹음을 배제하고 메모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읽음으로써 이 구조를 의도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Ⅴ. 간접사실의 종합과 합리적 의심

1. 명태균 진술 없이도 남는 사실들

간접증거는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종합적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6]. 다음의 사실들은 모두 명태균 진술이 아닌 메시지·통신기록 ·계좌내역으로 확인되는 자료들이고, 대부분 항소심도 인정하였습니다.

일시(2021년)	사실
1. 8.	본경선 일반시민 여론조사 100%로 경선 룰 확정. 같은 날 오세훈이 김영선에게 명태균 연락처 요청
1. 20.	오세훈이 명태균·김영선과 저녁 만남, 강철원 동석. 명태균이 권역별 여론조사 필요성 설명
1. 22.	11:00 오세훈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공표 → 17:09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발신 → 17:31 강혜경이 그 여론조사의 공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고 → 18:27 "서울시 여론조사 테스트 진행" → 20:29 강철원 "언제라도 필요하신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1. 23.	명태균이 오세훈 사무실 방문, 같은 시각 연번 1 결과 수신
2. 1.	김한정이 만난 적 없는 명태균 측 계좌로 1,000만 원 입금
2. 4.~2. 5.	강철원이 공표 언론사(머니투데이) 연결. 연번 4 실시 당일 김한정 550만 원(부가세 포함) 입금
2. 6.~2. 15.	연번 4에서 오세훈 열세 → 보도 보류, 언론사 제외, 9일 뒤 연구소 홈페이지에만 공표
2. 18.	연번 6 실시 당일 김한정 550만 원 입금
2. 22.	캠프 일정기획팀장 "우리가 의뢰해서", "우리 돈 써서"

[6]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항소심은 이 사실들을 하나씩 떼어 "그것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 이들을 한데 놓았을 때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캠프와 무관한 것이었다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이 제시한 대안 가설은 두 가지입니다. ① 명태균이 김종인에게 역량을 과시하려고 스스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 ② 김한정이 인정받고자 자발적으로 비용을 보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이 합리적 의심이 되려면 위 표의 사실들과 양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항소심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했어야 합니다.

i 왜 비서실장이 공표 언론사를 연결하였는가? 명태균이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스스로 여론조사를 했다면, 오세훈 캠프의 비서실장이 그 공표 언론사를 직접 연결해 줄 이유가 없다.

ii 왜 공표용 조사 당일마다 후원자가 부가세까지 포함한 돈을 보냈는가? 김한정이 독자적으로 명태균을 도와주었다면, 공표용 조사 실시일과 입금일이 정확히 일치하고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이 입금된 것은 설명되지 않는다.

iii 왜 캠프 내부에서 '우리 돈'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김한정이 캠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낸 돈이라면, 캠프 내부자가 그것을 '우리 돈'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나 항소심은 위 세 가지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2. 공소사실 일시의 엄격한 증명

항소심은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 일시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법리(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를 들어, 강혜경의 14:20 설문지 전송이 명태균이 말한 통화 시각(15:30)보다 앞선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은 '2021. 1. 22.경'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범죄의 본질은 특정 통화의 시각이 아니라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입니다. 불리한 여론조사는 11:00에 공표되었으므로 14:20 이전에 연락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4년 뒤의 진술에서 시각을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화 시각 진술의 오류는 그 시각의 통화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뿐, 그 날 전후로 의뢰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의뢰 자체는 1. 20. 만남부터 1. 23. 결과 전달까지 이어진 과정으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1심은 이 점을 정확히 구분하였습니다. 1심은 "명태균의 진술 중 '피고인 오세훈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구체적 시간, 장소'에 관한 부분은 신빙할 수 없으나, 적어도 피고인 오세훈이 2021. 1. 22.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연번 1번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진행되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이 구분을 무시하고 통화 시각의 불일치를 의뢰 사실 자체의 부정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대법원 2010도14487 판결은 '다른 시기에 범행하였을 개연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다른 시기의 범행이 아니라 '2021. 1. 22.경'이라는 같은 날의 의뢰이고, 시간 차이는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항소심은 이 판례를 근거로 통화의 정확한 시각까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였고, 이는 범죄의 일시에 관한 엄격한 증명의 범위를 오해한 것입니다.

3. '만난 지 이틀 만의 의뢰'라는 전제의 오류

항소심이 명태균의 '1. 22. 의뢰' 진술을 배척한 또 하나의 핵심 근거는 '만난 지 이틀 만'이라는 점입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오세훈은 2021. 1. 20. 김영선 소개로 처음 명태균을 만났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지 2일 만에 명태균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67쪽).

그러나 1심은 오세훈이 2020. 12. 9. 오후 "김종인이 보냈다"며 찾아온 김영선의 소개로 명태균을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처음 만났고, 그 자리에서 명태균을 "선거 및 여론조사 전문가"로 소개받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1심은 그 근거로 관련자 진술과 함께 오세훈 본인의 특검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01)를 들었습니다. 오세훈 스스로도 오랜만에 연락이 온 김영선을 만난 이유가 김영선이 김종인의 이름을 거명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안에서도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 57쪽: 첫 만남을 “2021. 12. 9.”로 적음(연도를 잘못 적은 것으로 보임)

○ 59쪽 각주: 명태균이 2025. 3. 6. 창원지검에서 “2020. 12. 9. 오세훈을 만난 것이네요”라고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함

○ 별지(명태균 진술 정리): “2020. 12. 9. 오세훈을 처음 만났을 때”라고 기재함

○ 67쪽(판단의 전제): 첫 만남을 2021. 1. 20.로 봄

1심 판결에 따르면 2021. 1. 22. 의뢰는 첫 만남 후 이틀이 아니라 44일 뒤의 일입니다. 그 사이 오세훈은 2021. 1. 8. 경선 룰이 확정된 당일 김영선에게 명태균의 연락처를 직접 물었고, 1. 20.에는 스스로 식당을 예약하여 명태균을 불렀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로 소개받은 지 한 달 반이 지나, 연락처까지 직접 구한 상대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다른 날짜를 인정하면서 그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전제로 '이틀 만의 의뢰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쌓았습니다. 경험칙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 자체가 기록과 다른 것입니다.

4. 동기 판단의 자기모순

항소심은 캠프의 이창근이 명태균의 조사 결과를 검증한 뒤 '쓸 가치가 없다'고 보고한 사실을 들어, 오세훈에게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그 검증 이후에도 강철원이 2021. 2. 초순까지 명태균과 여론조사 업체와 공표 언론사를 공유하고, 명태균으로부터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쓸 가치가 없다는 조사를 위해 비서실장이 공표 언론사까지 연결해 주었다는 것을 함께 인정한 셈입니다.

또 항소심은 선거일 60일 전인 2021. 2. 5.까지는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되지 않았는데도 캠프에 별도의 여론조사 조직이 없었다는 점을 동기 부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괄호 안에 "다만 이를 공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적었습니다.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그러므로 경선에서 내세울 공표용 조사가 필요했다면 제3자의 이름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의뢰 동기 그 자체인데, 항소심은 자신이 적은 이 사정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5. 합리적 의심과 추상적 가능성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리적 의심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말하고,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항소심은 앞서 본 두 가지 대안 가설[7]을 '의심이 든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볼 여지도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가설이 합리적 의심이 되려면 위 표의 사실들과 양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대안 가설은 비서실장의 언론사 연결, 공표용 조사 당일의 부가세 포함 입금, 캠프 내부의 '우리 돈' 인식과 양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항소심의 대안 가설이 논리와 경험칙에 기초한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항소심은 김한정의 최초 1,000만 원 입금에 대하여 "경위와 목적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김한정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사정에는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 본인 명의 계좌에서 부가세를 포함해 송금한 것은 '은밀한 대납답지 않다'며 무겁게 취급하였습니다. 이 입금 사실은 오히려 그 돈이 특정 여론조사의 대가였다는 점을 가장 직접 보여주는 사정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항소심은 오세훈에게 불리한 사정은 가볍게, 유리한 사정은 무겁게 평가하여 증거평가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7] ① 명태균이 김종인에게 역량을 과시하려고 스스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
② 김한정이 인정받고자 자발적으로 비용을 보전했다는 것

더구나 항소심은 그 1,000만 원이 후보에게 접근하기 위한 '테스트용 여론조사'의 경비 등을 보전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추정대로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명태균이 오세훈 캠프에 접근하려고 실시한 조사의 비용을 오세훈의 후원자가 대신 낸 것이 되므로, 후보자의 정치활동 비용을 제3자가 부담한 것이 아닌지 따져야 합니다.

Ⅵ. 정치자금법 적용의 문제

1. 여론조사 제공과 정치자금의 기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제2호는 제3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것을 기부로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어야 합니다[8].

후보자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부담하는 것은 이 규정이 상정한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 점에서는 1·2심의 법리 이해가 다르지 않고, 항소심도 여론조사 제공의 정치자금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2. 항소심이 판단하지 않은 사실관계

항소심은 명태균이 오세훈의 의뢰와 무관하게 실시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김한정이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도 상정할 수 있으나, 이는 '오세훈의 의뢰'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으므로 더 살피지 않는다고 하였습다.

[8]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등

따라서 항소심 무죄는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법률 해석도 아니고, 캠프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인정도 아니다. '후보자의 직접 의뢰'와 '후보자의 대납 요청' 두 지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상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특검이 항소심에서 '캠프가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부담한 사실을 인식·용인하였다'는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검토하였는지는 별도로 짚어야 합니다. 판결문상 그런 공소장 변경은 보이지 않고, 상고심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3. 항소심 판결의 악영향

비공표 여론조사는 의뢰자 기록이나 신고 절차가 없고, 비용은 현금·차명·사후 정산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이 인용한 강혜경씨의 진술도 그러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후보자의 직접 의뢰가 기록으로 남지 않고, 직접증거는 대개 여론조사업자나 비용 부담자, 즉 공범이거나 이해관계인의 진술뿐입니다.

만약 여기에 항소심의 기준이 더해진다고 해 보면, ① 직접증거인 진술자의 전체 신빙성이 약하면 간접증거가 특정 일시의 의뢰를 단독으로 증명해야 하고, ② 후보자와 비용 부담자 사이의 요청도 별도의 직접증거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더욱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이 설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3자가 비용을 대는 여론조사 지원에 대하여 후보자의 책임을 묻기는 현저히 어려워집니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후보자의 직접 의뢰를 보여주는 문서나 녹음이 없는 한 제3자가 비용을 대는 여론조사 지원은 사실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기준이 실무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명태균 진술이 핵심인 다른 사건들에도 같은 논리가 원용될 수 있습니다.

Ⅶ.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단순한 사실오인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그러나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게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증거능력·합리적 의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 건 항소심 판결에는 다음 여섯 가지 파기 사유가 있습니다.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간접사실의 분절 평가

앞서 V.장에서 살핀바와 같이, 항소심은 캠프 일정기획팀장의 카카오톡, 오세훈의 발신 내역, 강혜경의 당일 메시지, 강철원의 언론사 연결, 공표용 조사 당일의 입금을 각각 떼어 "그것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배척하였습니다.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하여 판단하지 않고 각 증거에 단독으로 공소사실 전부를 증명하도록 요구한 것은,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한 것으로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히 공표용 조사의 실시일과 입금일이 일치하고, 그 조사의 공표 언론사를 비서실장이 연결하였으며, 결과가 불리하자 공표가 늦춰지고 캠프가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흐름은 하나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동시에 설명되려면 캠프의 의뢰 외에 다른 가설이 필요한데, 항소심이 제시한 대안 가설(명태균의 자발적 영업, 김한정의 독자적 지원)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설명하지 못하는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9].

2. 합리적 의심에 관한 법리오해

[9]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항소심이 무죄의 근거로 삼은 대안 가설은 "의심이 든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수준에 머물고, 비서실장의 언론사 연결, 공표용 조사 당일의 부가세 포함 입금, 캠프 내부의 '우리 돈' 인식과 양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기초한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추상적 가능성을 이유로 유죄의 심증을 배척한 것은 합리적 의심에 관한 법리오해를 저지른 것입니다[10].

3.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항소심은 강혜경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관련성을 '인물 공통' 여부로만 판단하고, 같은 조직·같은 수령 경로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라는 범행 수단·방법의 공통성은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전자정보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는 수사 개시의 독립성, 언론 공개, 영장주의 회피 의도의 부존재를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같은 사정이 그대로 해당하는 원본과 대체증거들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은 법리오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4. 탄핵증거의 한계 일탈과 심리미진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이고 범죄사실의 존부를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측이 제출한 명태균-김한정 통화 녹음을 탄핵증거로 채택하고도, 이를 근거로 '김한정은 오세훈이 아닌 강철원을 통해 명태균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선별 제출 의혹이 제기된 녹음의 전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핵심 진술 배척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탄핵증거의 한계를 벗어난 증거 사용으로 심리를 미진한 것입니다.

10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5. 공소사실 일시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2010도14487 판결은 공소사실의 일시가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하였을 개연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다른 시기의 범행이 아니라 '2021. 1. 22.경'이라는 같은 날의 의뢰이고, 진술 상의 시간 차이는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항소심은 이 판례를 근거로 통화의 정확한 시각까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였고, 이는 범죄의 일시에 관한 엄격한 증명의 범위를 오해한 것입니다.

6. 판결 이유의 모순과 판단누락

항소심은 오세훈과 명태균의 첫 만남을 57쪽에서는 '2021. 12. 9.'로, 59쪽 각주와 별지에서는 '2020. 12. 9.'로, 67쪽에서는 '2021. 1. 20.'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마지막 날짜를 전제로 '처음 만난 지 2일 만의 의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이 피고인 본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2020. 12. 9.로 인정한 사실을 뒤집으면서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론에 직접 영향을 준 사실 전제에 관하여 판결 이유가 서로 모순되고, 원심 판단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입니다[11].

Ⅷ. 맺음말

진술자가 믿기 어렵다는 것과 그 진술이 말하는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카카오톡, 계좌 기록, 통신 기록, 면담 메모처럼 진술자와 무관하게 남은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법원은 그 자료들을 한데 모아 평가하여야 합니다. 본 건 항소심은 진술자를 탄핵하는 데는 상세하였으나, 진술자를 빼고 남는 자료를 종합하는 데는 인색하였습니다.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마저 판결문 안에서 서로 어긋납니다.

이에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명태균 진술과 무관하게 남은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하여야 합니다. 끝.

11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위험성: 확정되면 '제2의 오세훈-명태균 게이트'는 처벌할 수 없다

2026. 11. 5.
박주민 국회의원(서울은평갑)
국회 행정안전위원 /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은폐 진상조사단장

1. 들어가며

1심은 명태균 진술을 통화기록·메시지·입금 시점과 하나하나 대조해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뒤 나머지 간접증거를 개별적으로 떼어 배척했고, 오세훈의 의뢰가 없는 경우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며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인정의 전제인 첫 만남 날짜마저 판결문 안에서 서로 모순됩니다(2020.12.9.과 2021.1.20.).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증거판단이고,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문제는 이 사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아래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정치자금 기부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매우 좁게 보았습니다. 이 기준이 앞으로의 선거 여론조사·정치자금 사건 수사와 재판에 그대로 쓰인다면 선거의 공정을 지키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2. 여론조사 영역에서 생길 문제

가. 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도 무죄

이 판결이 확정될 때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 측이 쓸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 처벌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후원자 김한정은 명태균 측에 3,300만 원을 보냈고, 그중 550만 원씩 두 차례는 공표용 조사가 실시된 당일 부가세까지 맞춰 입금됐습니다. 항소심도 첫 1,000만 원에 대해 "협력관계를 배제하고서는 … 그 경위와 목적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적었고, 강철원이

명태균으로부터 조사 결과 일부를 전달받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오세훈이 먼저 의뢰하고 비용을 대신 내 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돈이 건너간 사실도, 조사 결과가 캠프로 간 사실도 있지만, 의뢰와 요청의 직접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기준입니다. 후보자가 직접 비용을 내면 정치자금 회계에 남고, 후보자 명의 조사는 공표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후원자가 대신 내면 후보자의 회계에는 남지 않고, 의뢰와 요청을 따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처벌도 어려워집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다음 선거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일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 의뢰 은폐가 면죄부가 되는 구조

후보자가 직접 의뢰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상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됩니다. 경선에서 내세울 공표용 조사가 필요한 후보자라면 제3자 명의를 빌릴 수밖에 없고, 의뢰 사실은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1심은 이 점을 정확히 짚어 "의뢰로 실시된다는 점을 드러내지 않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을 의뢰를 부정할 근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정반대였습니다. 조사 대상·횟수에 관한 구체적 협의 정황이 없다는 점을 의뢰 부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감출 동기가 분명한 행위에 대해 감춘 흔적이 없다는 것을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무죄를 준 셈입니다. 이 판단이 확정되면 법이 금지한 후보자 명의 조사를 제3자 명의로 돌리고 흔적을 지울수록 처벌을 피하게 됩니다. 은폐를 할수록 무죄가 되는 구조입니다.

다. 조사의뢰자와 실제 비용 부담자의 불일치

1심이 인정한 공표용 조사 한 건의 경과를 보면, 강철원이 명태균에게 전국 언론사를 소개해, 이 조사를 그 언론사 이름으로 공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오세훈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오세훈과 강철원이 항의했고, 언론 보도는 무산됐습니다. 결과는 그 언론사 이름을 뺀 채 9일 뒤 연구소 홈페이지에만 공표됐습니다. 조사 비용 550만 원은 조사 당일 후원자 김한정이 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입니다.

공표된 결과만 보면 누가 이 조사를 원했고 누가 비용을 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과가 유리하면 언론을 통해 내보내고, 불리하면 언론사 이름을 빼고 조용히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1심은 이 과정 전체를 오세훈 측이 조사를 의뢰했다는 정황으로 봤습니다. 항소심 기준대로라면 이것만으로는 의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실제로는 후보자가 원하고 후원자가 돈을 낸 조사라도 언론사나 업체 이름만 조사의뢰자로 내걸면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3. 정치자금법 적용에서 생길 문제

가. 조문에 없는 '후보자의 의뢰' 요건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는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를 기부로 봅니다. 후보자의 사전 의뢰는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1심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월 23일 입금된 700만 원에 대해, 의뢰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고 비용 보전을 요청한 경우라도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죄가 안 돼서가 아니라, 공소사실이 '오세훈의 의뢰'로 짜여 있어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항소심은 '의뢰로 인한 비용 지급 의무의 발생'을 기부 성립의 전제로 세웠고, 후보자의 요청 없이 지급한 돈은 "피고인 A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라고 볼 수 없다"고까지 적었습니다. 확정되면 법문에 없는 요건이 실무 기준처럼 굳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나. 브로커를 거친 자금의 '경비 보전' 처리

항소심은 2021. 2. 1.의 1,000만 원을 명태균의 경비나 기존 비용을 보전한 돈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이 인용한 김한정의 진술은 명태균이 '시장 만나고 도와주느라고 쓴 경비'가 그 정도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줬다는 것입니다. 후보자를 돕는 데 든 비용을 후원자가 댄 것이라면 그 자체로 정치활동 비용의 제3자 부담에 해당하는지 따졌어야 합니다. 항소심은 이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

다. 확정되면 후보자와 후원자 사이에 브로커 한 명만 끼워 넣어도 '브로커 개인 경비'라는 항변이 통하게 됩니다.

4. 비공표 여론조사 제도 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1월 비공표 여론조사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비공표 대책 중 이행된 것은 실시신고 확대 한 가지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지점은 여전히 제도 밖에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비공표 조사기관 등록 의무화

미래한국연구소는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였고, 2019년부터 네 차례 고발됐지만 선거 때마다 비공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등록취소(공직선거법 제8조의9 제5항)는 등록 기관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 이후 실시신고로 파악된 미등록 업체·기관은 88곳입니다. 이들은 분석전문인력·조사시스템 등 등록 요건을 검증받지 않았고 실태점검 대상도 아닙니다. 등록 의무화는 선관위 대책의 첫 번째 과제였지만 빠졌습니다.

2) 비공표 조사 결과 등록

실시신고는 조사 개시 2일 전까지 목적·표본 크기·방법·설문을 내는 사전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표본 부풀리기는 조사가 끝난 뒤 결과 단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신고만으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비공표 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여심위에 등록하게 하고, 정당·정책연구소의 신고 면제를 통한 우회 여지도 정비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정개특위 소위에서 결과 등록에 수용 의견을 내고도 법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3) 공소시효·자료보관 기간 연장

이 사건에서 재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즉 누가 비용을 냈느냐입니다. 여론조사를 어떻게 만들고 부풀렸는지는 공직선거법의 영역이지만, 이 부분은 어디에서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하고, 조사

기관의 자료 보관 의무도 선거일 후 6개월에 그칩니다. 이 사건처럼 선거 후 3년여가 지나 공익제보로 드러나면 따져 볼 자료도, 시효도 남지 않습니다. 선관위 대책대로 공소시효와 자료보관 기간을 5년으로 늘려야 합니다.

5. 맺으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앞으로 어떤 후보도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측근을 시키고, 브로커를 끼우고, 비용은 후원자에게 맡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오가고 결과가 캠프로 넘어가도, 의뢰서 한 장 남기지 않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법을 지킨 후보는 손해를 보고, 법을 피해 간 후보는 안전해집니다. 이것을 공정한 선거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한 정치인의 유무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심은 증거를 하나하나 맞춰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그 증거를 하나씩 떼어 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느 쪽이 상식에 맞는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채증법칙 위반과 판결 이유의 모순을 바로잡아, 여론조사를 이용한 우회로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국회도 손 놓고 있지 않겠습니다. 비공표 여론조사의 기관 등록과 결과 등록, 공소시효와 자료보관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습니다. 유권자가 보는 여론조사 뒤에 누가 있는지, 누가 돈을 냈는지 숨길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제2의 오세훈-명태균 게이트'가 다시는 선거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2026. 11. 5.

발제자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Ⅰ. 사건 개요 및 문제 제기

1. 사건의 개요

오세훈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명태균 말 뿐이다. 그런 명태균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오세훈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세훈의 후원자인 김한정과 명태균 간 돈거래, 오세훈의 최측근 강철원의 명태균 여론조사 개입 증거들이 드러났지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문제의 제기

오세훈의 항소심 판결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오세훈과 명태균의 첫 만남 시점이 제멋대로 기술돼 있는 점 등이 대표적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의 사실을 전제로 ”오세훈이 처음 만난지 2일만에 명태균에게 불법여론조사를 의뢰했을 리가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강혜경-김한정 녹음파일 문제도 심각합니다. 재판부는 관련없는 사건을 통해 확보된 증거라는 이유로 결정적 증거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녹음파일은 수사과정과는 별개로, 특검의 수사가 시

작되기 훨씬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입니다. 증거능력을 다툴 이유가 없는 증거기록입니다.

오세훈 항소심 무죄 판결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최근 내란사건이나 윤석열-김건희 관련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보이는 흐름과 생각하면 문제가 더 큽니다. 법원발 반동의 흔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II. 현재 상황

최근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등에서 줄줄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내란죄로 최종 실형을 받을 사람은 내란 수괴 윤석열 한 명 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판결이 죄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촉발한 대법관 제청 논란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정권과 사법부의 대립, 개혁에 반발하는 사법부의 조직적인 저항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대선 한달 전 조희대 대법원의 '거의 불법적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파기환송은 사법부가 현 정부와 여당을 바라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III. 대응 방안

윤석열 내란은 윤석열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물리력이 동원된 군과 경찰은 물론 정치권 일부와 검찰 등 기득권 세력이 조직적으로 모여 만들어낸 반국가적 반동이었습니다. 최근 사법부가 벌이는 난동에 가까운 판결 역시 비슷하다고 봅니다. 개별 판사들의 일탈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걸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노1914)의 증거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자 변호사 이주하(법무법인 제이엘피)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제이엘피의 이주하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토론자로 불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발제자께서 1심과 2심의 전체 비교를 다루시므로, 저는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6노1914 판결)에서 증거법에 관한 세 가지 판단을 선정하여, 같은 쟁점에서 결론을 달리한 대법원 판례와 대조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전체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인정의 당부를 다시 다투기보다, 2심이 적용한 증거법리가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쪽수는 따로 밝히지 않으면 2심 판결문의 쪽수이고, 1심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고합1620 판결)의 쪽수에는 '1심'을 붙였습니다. 인물 표기는 2심 판결문을 따랐고, 1심과 2심이 같게 인정한 사실과 다르게 인정한 사실은 별지 1과 별지 2에 정리하였습니다.

2심은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54~62쪽) 의뢰와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62~85쪽),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86쪽),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14~32쪽)을 그 앞에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쟁점은 증거의 배제, 탄핵증거에 의한 신빙성 판단, 1심 판단을 번복한 것에 대한 근거의 여부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법리에 반하면 무죄 결론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1.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개관

사실 많은 법률가들과 언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2심 판결의 문제점은 증거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는 본론에 앞서 그 전체 윤곽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2심은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가 정하지 않은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같은 호는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를 기부로 봅니다. 그런데 2심은 공소사실이 기부에 해당하려면 **오세훈에게 비용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고, **김한정이 그 사정을 알고 대신 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으며(53쪽), **1,000만 원에 대응하는 여론조사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84쪽).

그러나 정치자금법의 규정은 채무의 선재나 개별 용역과의 대응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2심은 스스로 그 1,000만 원이 명태균이 오세훈을 만나고 돕는 데 지출한 경비를 보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는데(85쪽 및 각주 32), 그것이 바로 제3자가 후보자의 정치활동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2심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오세훈의 직접 요청, 즉 **직접적**

공모와 가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합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그런데 2심이 인정한 사실 자체로 보더라도 오세훈의 캠프 비서실장으로 오세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강철원을 통해 김한정이 명태균의 연락처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80~81쪽), 2심은 '강철원과 김한정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라는 주변 진술에 강한 신빙성을 부여하여 오세훈 측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82~83쪽).

다. 또한, 2심은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와 관련하여, 영장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판단에 대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보다 훨씬 좁고 엄격하게 판단하여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탄핵증거로 채택한 자료를 간접사실의 인정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김한정이 수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만 선별하여 제출한 녹음의 원본 동일성을 심리하지 않은 채 그 자료를 근거로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번복하였습니다.

라. 2심 판결은 판결문 자체 내 사실인정에서도 이유모순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 오기가 아니라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2심은, **오세훈이 2021. 1. 20. 명태균을 처음 만났다고 전제**하고, 처음 만난

지 2일 만에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언급하며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67쪽).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오세훈과 명태균의 2020. 12. 9.의 첫 만남을 인정하였고(1심 30쪽), 2심도 57쪽 등에서 같은 만남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심은, 오세훈은 2021. 1. 8. 명태균의 연락처를 먼저 요청하였고(62, 63쪽), 1. 20. 명태균의 선거 전략 설명을 들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2심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뢰 동기를 부정한 핵심 전제는 2심 판결 내의 다른 인정 사실과 충돌하는바,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이유 모순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위반에 해당합니다.

마. 2심은 기존의 '합리적 의심'의 판단기준을 그르쳤습니다.

(1) 오세훈의 후원자로 2011년부터 활동한 김한정은 명태균을 만난 적도 없는 상태에서 2021. 2. 1. 강혜경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 입금 전에 연번 1 내지 3의 비공표용 여론조사 3건이 이미 실시되었다는 점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2심도 이 입금에 대하여, 김한정의 후원자 지위와 오세훈·명태균의 협력관계를 배제하고는 경위와 목적이 설명되지 않아 오세훈의 부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사정이라고 인정하였고(80쪽), 김한정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였습니다(83쪽).

김한정은 이어서 2021. 2. 5.과 2. 18. 각 55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 두 입금은 각각 같은 날 실시된 연번 4, 6 공표용 여론조사에 대응하고, 2심 스

스로 이를 여론조사 당일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입금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84쪽). 여론조사 당일 500만 원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는 것은 대금 결제의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며, 이 입금은 오히려 대납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⑵ 그럼에도 2심은, ❶ 김한정은 오랜 후원자이기는 하나 선거캠프에서 별다른 역할이 없었고, 오세훈과 주고받은 문자도 2021. 1.부터 4. 15.까지 5건에 불과하여, 오세훈이 불법 비용의 대납을 직접 부탁할 사이로 보기 어렵다(81~83쪽), ❷ 김한정이 명태균을 강철원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오세훈이 관여하였다는 증거는 명태균 진술 외에 없다(80~81쪽), ❸ 1,000만 원의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2021. 2. 17. 이전부터 김한정과 명태균이 연락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유력한 사정으로 취급할 수 없다(83쪽), ❹ 지급 방식이 이례적이고, 또 ❺ 강혜경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여론조사 비용을 현금이나 차명으로 받고 사후에 정산하며 세금 처리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김한정은 후원자로 알려진 본인 명의 계좌에서 강혜경 명의 계좌로, 여론조사 당일,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입금하였으므로 은밀한 대납 요청을 받은 사람의 행태로 보기 어려워, 이 입금들은 오히려 '대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남긴다고 보았습니다(84쪽).

아울러 2심은 1,000만 원에 대응하는 여론조사가 특정되지 않고 테스트용 여론조사였을 수 있으며, 700만 원 등은 대응을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 수령 방식이 혼재되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84~85쪽).

⑶ 그러나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

리성 있는 의문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참조). 또 간접증거는 하나하나로는 증명력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참조).

❶ 오세훈이 김한정에게 불법 비용의 대납을 문자로 부탁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은밀한 부탁은 문자가 아니라 대면, 통화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경험칙입니다. 2심은 이 일이 은밀하게 진행되었다고 전제하면서, 흔적이 남는 문자의 건수가 적다는 점을 대납이 없었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캠프에서 맡은 역할이 없었다는 사정은 캠프의 공식 회계 밖에서 비용을 부담시키기에 오히려 적합한 사정입니다. 2심도 김한정이 독자적인 정치적 위상을 갖고자 하였고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82~83쪽). 이 동기는 자발적 지급의 근거가 되는 만큼 오세훈의 부탁을 들어주는 동기도 될 수 있습니다. ❷ 김한정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은 신빙성의 표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2심이 인정한 대로 김한정은 명태균의 연락처를 강철원을 통해 받았는데, 강철원은 오세훈과 공모한 캠프의 핵심 인물입니다. 캠프의 핵심 인물이 후원자에게 처음 보는 사람의 연락처를 건네며 만나보라고 하였다면, 이는 오세훈 측이 두 사람을 연결하였다는 것으로 오세훈 측의 관여가 있었다는 간접사실입니다.

❸ 1심은 김한정이 2021. 2. 1.경까지 제주도에 머무르고 있었고 2021. 2. 21.까지 명태균을 만난 적이 없었다고 보았으며, 강혜경의 계좌번호를 알 방법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39~40쪽 인용). 상식에 비추어도 만난 적도 없고 계좌번호를 알 방법도 없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보내는 일은 누군가의 요

청 없이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2심 역시 김한정의 후원자 지위와 오세훈·명태균의 협력관계를 배제하고는 경위와 목적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하였고(80쪽), 김한정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인정하였습니다(83쪽).

❹ 지급 방식이 이례적이라는 판단은 비교 대상부터 잘못되었습니다. 2심이 근거로 삼은 강혜경의 진술은 다른 후보자의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수령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84쪽 각주 30). 이 사건 2021. 2. 5.과 2021. 2. 18.의 입금은 연번 4, 6 공표용 여론조사에 대응합니다. 공표용 여론조사는 결과와 조사의뢰자가 외부에 공표되는 조사이므로, 그 비용을 현금이나 차명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고, 계좌이체와 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은 오히려 통상의 결제 방식입니다. 또, 대납자가 은밀하게 행동했어야 한다는 전제도 맞지 않는 것이, 2심은 김한정이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로 움직였다고 보았는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기여를 숨기려 현금이나 차명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즉, **대납동기와 지급 목적에 비추어 지급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자발적 지급 가설과 대납 가설 모두와 양립 가능**합니다.

반면, 시점과 금액의 일치는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1. 2. 5.에는 강혜경이 14:07경 "오늘 오후에 통장으로 돈을 받기로 했다"고 알렸고, 15:35경 5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41쪽 인용). 2021. 2. 18.에는 김태열이 입금 확인을 재촉한 지 41분 뒤인 15:28경 550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20:00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43쪽 인용). 이 550만 원은 명태균이 진술한 공표용 여론조사 1건당 비용과 같은 금액입니다(41쪽 인용). 명태균을 개인적으로 돕기 위한 돈이라면 왜 하필 해당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 조사의 비용과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2심이 인용한 김

한정의 진술, 즉 “돈은 내가 쓰는데 왜 여론조사를 보내주지 않느냐”라는 항의(83쪽)나 이준석·윤석열 경선의 여론조사 비용도 냈다는 인터뷰(85쪽)는 모두 김한정이 자신의 돈을 여론조사 비용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김한정이 개인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후원자가 만난 적도 없는 사람 쪽의 직원 계좌에 1,000만 원을 보내고, 이어서 개별 여론조사 당일에 그 조사 비용과 같은 금액을 두 차례 입금하였으며, 그 연결을 캠프 핵심 인물이 하였습니다. 이를 우연이나 자발적 후원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2심이 말한 합리적 의심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이 아니라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고, 이러한 증거 평가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형사소송법 제308조)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같은 법 제383조 제1호)에 해당합니다.

2. 증거능력의 배제

가. 창원지방검찰청은 2024. 9. 30. 강혜경으로부터 창원지방법원 2024-11376 압수·수색영장으로 휴대전화(갤럭시 S23울트라)를 압수하였습니다. 2심은 이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통화녹음 파일 등 전자정보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법수집증거로 보았습니다.

2심은 그 이유로, 영장의 혐의사실(김영선이 강혜경을 통하여 명태균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것)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행위 시기, 대상 선거, 관여자가 달라 핵심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고, 각 범행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공통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협의사실로 하는 영장을 새로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20~22쪽). 2심은 이에 따라 증거순번 20, 21, 22, 23, 23-1, 134, 135를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배제하였습니다(26~27쪽).

대법원은 같은 쟁점에서 다른 판단을 한 사례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에서, **영장 협의사실이 선거운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였고, 공소사실은 그보다 앞선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이었던 사안에서, 객관적 관련성은 협의사실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를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고, 인적 관련성은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도 인정된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과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에서, 원심이 영장 혐의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을 모두 파기하면서, 관련성은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를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나. 이 판례들에 비추어, 2심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법리를 오해하였습니다.

(1) 2심은 영장의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강혜경 명의 계좌를 통하여 명태균 측에 돈이 전달되었다는 구조이고, 영장의 피의자인 강혜경과

명태균은 이 사건 입금의 수령 당사자인 사실을 간과하고, 이 점이 범행 수단과 방법에 관한 간접증거가 되는지, 인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즉, 2심이 대법원이 관련성 판단의 요소로 명시한 '범행 수단과 방법'과 '인적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지 않은 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공통된다'는 점만으로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2017도13458 판결의 법리에 반합니다.

⑵ 2심은 27쪽과 28쪽에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1차 증거의 증거능력 및 이를 근거로 취득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및 예외에 관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1차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이 1차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형사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쓸 수 있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회피 가능성, 침해된 법익의 성질,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1차 증거를 계기로 얻은 증거가 2차 증거입니다. 이 2차 증거에도 같은 기준을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2심도 27쪽에서 이 점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1차 증거는 강혜경 휴대전화, 이른바 S23울트라에서 나온 전자정보로, 이 전자정보에는 강혜경과 김한정의 통화녹음도 포함되어 있었습

니다(27쪽).

2차 증거는 수사과정에서 이 전자정보를 제시하며 받은 피고인들과 명태균, 강혜경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2심은 1차 증거인 S23울트라 전자정보에 대하여 20쪽부터 22쪽까지,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고 영장을 새로 받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라고 보아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증거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영장을 새로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 즉 회피 가능성만 살피고,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를 포함한 나머지 요소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2차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강혜경이 협조적인 태도로 가환부 받은 자료를 다시 제출한 점, 전자정보의 핵심 부분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점을 이유로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28쪽과 29쪽).

그런데 이 사정들은 모두 증거능력의 예외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원래 1차 증거를 수집하던 단계의 수사기관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에, 1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 적용하였어야 합니다.

즉, 2심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 법리를 2차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서만 하고, 1차 증거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⑶ 마지막으로, 김한정이 명태균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증거를 2심이 어떻게 취급하였는지 말씀드립니다. 이 경위에 관한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증거순번 135번 녹취록입니다. 이는 김한정이 2024. 9. 10. 강혜경과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S23울트라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입니다. 1심은 이 녹취록을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하였고(1심 6쪽), 1심 63쪽 내지 65쪽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2심 29쪽 각주 6의 기사에 따르면, 김한정은 위 통화에서 "만나보시죠"라는 말이 오간 끝에 자신이 명태균을 만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합니다.

1심은 이를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관심을 갖고 김한정에게 만나볼 것을 요청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1심 65쪽). 그리고 '만나보시죠'는 김한정이 오세훈에게 한 말이라는 오세훈의 주장은 대화의 전후 맥락과 김한정이 변호사에게 한 진술에 비추어 배척하였습니다.

둘째, 김한정이 2심에서 제출한 2021. 3. 6.자 명태균과의 통화 녹취입니다. 2심은 이를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의 탄핵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한정이 명태균의 연락처를 오세훈이 아닌 강철원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 녹취와 일치한다고 인정하였고(80~81쪽), 오세훈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 외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81쪽).

그런데 김한정이 명태균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이 두 증거에 대한 2심의 판단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2심은 오세훈에게 불리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135번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배제하였습니다(20~22쪽, 26~27쪽). 반면, 오세훈에게 유리한 2021. 3. 6.자 녹취는 탄핵증거로 채택한 뒤, 탄핵증거의 용도를 넘어 경위에 관한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즉 김한정이 오세훈이 아닌 강철원을 통해 명태균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80~81쪽), 김한정이 오세훈과 여론조사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가 없다는 사실(82쪽 각주 27), 두 사람이 적어도 2021. 3. 6. 이전에 친분을 형성하였다는 사실(85쪽 각주 34)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오세훈의 대납 요청 여부에 관한 간접사실입니다.

증거를 배제한 판단에는 두 가지 법리 오해가 있습니다(이미 위에서 언급하였음).

대법원 2017도13458 판결은 영장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이 다르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면 관련성을 인정하고, 공범 관계 등 사람 사이의 관련성도 인정합니다. 2심은 이 기준을 설시하였으나, 영장 사건과 이 사건 모두 강혜경 명의 계좌를 거쳐 명태균에게 금원이 전달되는 구조인지, 영장 피의자인 강혜경과 명태균이 이 사건 입금의 수령 당사자인지를 구체적으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공통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결론만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2심은 1차 증거인 S23울트라 전자정보에 대하여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의 예외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법리 오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합니다.

3. 탄핵증거의 사용 범위

가. 2심은 김한정이 당심에서 제출한 명태균과 김한정 사이의 2021. 3. 6.자, 2021. 3. 13.자 통화 녹취 등을 명태균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58쪽 각주 14).

특검은 김한정이 이 녹취를 발견하여 제출하게 된 경위에 의심되는 사정이 있고 전체 통화 중 김한정에게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였다고 다투었습니다. 2심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의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적극적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고,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거나 성립의 진정을 의심할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은 불리한 증거까지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같은 쪽).

대법원은 탄핵증거의 용도를 엄격하게 한정합니다. 탄핵증거는 상대방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따지는 증거입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대법원은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과 2012. 10. 25. 선고 2011도5459 판결에서,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95도2945 판결의 원심은, 피고인이 탄핵증거로 낸 진술조서 사본을 근거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인정하는 듯한 설시를 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탄핵증거의 용도를 벗어난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2심 판결문에서 이 녹취가 사용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태균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는 부분입니다. 김한정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57~58쪽), 오세훈이 비용을 요청하러 김한정을 직접 만나러 간다고 말하였다는 진술(67~68쪽), 오세훈이 '울면서 매달렸다'는 진술(79쪽)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탄핵증거 본래의 용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 2항에서 말씀드린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2심은, 김한정이 명태균의 연락처를 오세훈이 아닌 강철원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점이 2021. 3. 6.자 녹취의 대화와 일치한다고 하였고(80~81쪽), 김한정이 명태균을 통하여 오세훈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82쪽 각주 27), 두 사람 사이에 적어도 2021. 3. 6. 이전에 친분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85쪽 각주 34).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오세훈의 요청 여부와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간접사실이고, 95도2945 판결의 원심이 상해 부위를 인정한 것과 구조가 같습니다.

2심이 탄핵증거로 채택하였다고 밝힌 자료를 간접사실 인정의 근거로 사용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을 요구하는 증거재판주의(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반합니다.

2심은 나아가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명태균 진술 중 쟁점에 맞는 부분을 믿으려면 보강증거 등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55쪽, 61~62쪽). 이 법리는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 가운데 주요한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밝혀지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상당히 약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나머지 부분을 믿으려면 그 부분만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증명 기준이 높아집니다. 2심은 61~62쪽에서 명태균 진술에 이 법리를 적용하여, 쟁점에 관한 진술을 믿으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보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도2889 판결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금품수수 사건에서 공여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때의 법리입니다.

이 사건은 입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캐치콜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이고, 1심은 명태균 진술 중 객관적 증거와 당시 정황에 맞는 부분만 채택하였습니다(1심 27쪽). 2심은 '주요 부분을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의 일부를 김한정이 2심에서 제출한 통화 녹취, 즉 탄핵증거로 마련하였습니다(57~58쪽, 67~68쪽, 79쪽).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로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고 증거능력의 요건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심은 이 녹취로 명태균 진술의 일부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나머지 진술 전체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가중된 증명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요건이 완화된 증거가 증명 기준을 높이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녹취가 '객관적 사정'의 근거가 되려면 그 자료의 신뢰성이 먼저 검증되어야 합니다. 특검은 제출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고 김한정에게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였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고(58쪽 각주 14), 원본의 대조나 전체 녹취의 확인에 관하여 심리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4. 김한정이 2심에서 제출한 증거의 채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심 판결문은, 김한정이 이 녹취를 당심에서 제출하였다는 점과 특검이 그 경위를 다투었다는 점을 적고 있지만(58쪽 각주 14), 김한정이 이 녹취를 어떻게 보관하거나 확보하였는지에 관한 심리나 판단은 없습니다.

한편, 1심은 양형 이유에서, 김한정이 이 사건 범행의 전모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명태균과 나눈 통화녹음 파일 전부를 삭제하였다는 점을 범행 이후의 불리한 정황으로 들었습니다(1심 88쪽, 1심 재판부 설명자료 13쪽).

1심이 삭제되었다고 본 파일과 2심에서 제출된 녹취가 어떤 관계인지는 판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1심이 전부 삭제되었다고 인정한 파일 가운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이 2심에서 제출된 것이라면, 법원은 그 보관·복구 경위와 나머지 녹음의 존재를 먼저 심리하였어야 합니다. 특검이 전체 녹음의 제출을 구하였고, 김한정도 재판부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전체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2심이 이를 명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심리미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원본 동일성에 관하여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에서, 사본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에서, 그 증명은 해시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본 제출이 곤란할 때에만 생성·전달·보관에 관여한 사람의 진술과 검증·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문은 원본 파일과의 대조, 감정, 작성자 신문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심이 이 녹취를 탄핵증거로만 사용하였다면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의 완화된 기준으로 족하겠지만, 앞서 본 것처럼 간접사실 인정에 사용하였다면 2012도7461 판결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심은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였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까지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제출의무의 유무와 일부만 제출된 녹취의 증명력 평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심은 원본 동일성에 관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자료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2012도7461 판결과 2022도1864 판결의 법리에 반하는 심리미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1심 판단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겠습니다.

2심은 55쪽에서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판결은 1심이 증인 진술을 믿고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이 그 신빙성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1심의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2심이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번복하면서 추가한 자료는 **당심 증인신문과 김한정이 제출한 탄핵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2008도7917 판결의 사안과 구조가 같습니다. 1심은 증인을 직접 신문한 뒤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고, 2심이 그 증인을 다시 신문한 것 외에 새로 얻은 자료는 피고인이 선별하여 제출한 탄핵증거뿐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피고인이 선별하여 제출한 통화 녹음에 대하여 원본과 전체 녹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동일성을 심리한 뒤에야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으나, 2심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을 판결문에 특정하지 않은 채 신빙성 판단을 번복하였으므로,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반하는 채 증법칙 위반입니다.

정리하면, 2심의 증거능력 배제, 탄핵증거의 사용, 신규 제출 증거의 채택은 각각 대법원 2017도13458 판결, 95도2945 판결, 2012도7461 판결 및 2008도7917 판결의 법리와 충돌합니다. 이는 사실인정의 당부 이전에 증거법 적용의 문제이고, 법률심인 상고심이 바로잡아야 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토론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